

의안번호	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6.06.15.
추 계 번 호	26E235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1조의27(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○ (대상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○ (요건) 1인 1계좌로, 계약기간 최소 3년(연장 가능) ○ (계좌 유형) 신탁형·일임형·투자중개형 ○ (운용자산) ① 집합투자재산의 80% 이상을 국내 주권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¹⁾, ②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③ 예탁금 등의 금융상품 ○ (납입한도) 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 -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○ (과세특례) ① 과세기간별 납입금액의 10%를 소득공제 ②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- 손익과 손실을 통산 ○ (중도해지) 3년 이내 중도해지(계좌 보유자의 사망·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) 시 과세특례 적용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- 3년 이내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봄	-

주: 1) 국외에서 발행·거래되는 국외 상장주식·국외상장주식대체자산 등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7(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① 납입금액의 10%를 소득공제, ②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7 신설 등)
 - 개정안에 따른 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와 계좌 유형, 납입금액 한도, 최소 가입기간 등의 요건이 동일
 - (계좌 유형) 신탁형·일임형·투자중개형
 - (납입금액 한도) 연간 2천만원, 5년 간 총 1억원
 - (최소 가입기간) 3년
 - 다만 가입대상, 운용자산 유형, 비과세 적용 규모 등의 요건은 상이
 - (가입대상) 현행 ISA는 19세 이상인 거주자(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)이나, 개정안의 청년형 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거주자
 - (운용자산 유형) 현행 ISA는 예적금·예탁금·집합투자증권·파생상품·국내 상장주식 등(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상장주식 등 제외)을 포함하나, 개정안의 청년형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·국내 상장주식·예탁금 등에 투자할 수 있음
 - (비과세 적용 규모) 현행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(농어민형·서민형 400만원)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(9%)를 적용하나, 개정안의 청년형 계좌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, 1인당 납입금액 및 종합(근로)소득세 실효세율, 계좌 내 상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, 손익통산 대상인 손실액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상황에서 이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